

1. 건설근로자공제회

1. 사업 목적

-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**생활비**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**519백만 원**(100만 원 × 519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**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**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직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**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 2022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**
 - ※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(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 - ※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임
 - ※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→적립일수 확인하기(빠른메뉴)→나의 정보조회 또는 「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-1122」를 통해서 확인 가능
 - ※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(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) 받은 근로자 제외
 - ※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수혜자,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
 - ※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**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** 이수
- 지원인원: **519명**
- 지원내용: **학기당 100만 원 지원**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**1개 학기**(‘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**가계소득(100점)**

- 동점자 처리기준: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* > **고학년**** > 성적상위자 > 2022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>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> 연소자

*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하며, 기부처 최종 확인
 **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
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2. 벅스코리아

1. 사업 목적

- 저소득층 디지털 인재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총 252백만 원(200만 원 × 63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IT 및 게임 관련 학과 재학생
 - ※ 신청자 학과명에 'IT, 컴퓨터, 전자, 보안, AI, 데이터, 게임, 콘텐츠'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, 위 단어 불포함 학과는 기부처에서 관련학과 여부 심사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인원: 총 63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3년 1학기 ~ 2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 + 가산점*(10점)
 - *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, 입상경력당 5점 가산(최대 10점, 기부처 최종 확인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증빙서류
 - ※ 입상경력 있는 경우만 제출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3. 말남장학금

1. 사업 목적

-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20백만 원(200만 원 × 1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신입생
 - ※ 전문대,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- 신청자격: 휘경여고 졸업생 중 2023년도 1학기 수도권* 소재 대학 입학(예정)자 * 서울, 경기, 인천
- 성적기준: 없음 ※ 신입생 선발
- 지원인원: 1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자기소개서(5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자기소개서 점수 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*
 - * 졸업증명서는 선발대상자의 1.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(신청 시 제출 불필요)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

자기소개서

○ 평가기준

| 항목 | 진솔성 | 논리성 | 성실성 | 성장가능성 | 목적부합성 | 합계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배점 | 20 | 20 | 20 | 20 | 20 | 100 |
| 점수 | | | | | | |

○ 채점기준

| 채점기준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점수 | 20~18 | 17~15 | 14~12 | 11~9 | 8~5 |

○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
4.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

1. 사업 목적

-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
 - 80백만 원(200만 원 × 4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 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
 - ① 사무금융분야(제2금융권*)
 -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,
 -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
 - ② ①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
 - * 신청가능 원사업장(금융기관)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(참고1)
 - ※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(해당기관에 확인) (참고2)
 - ※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
 - ※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
 - ※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(단,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, 자녀 2명까지 지원)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4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3년 1학기)
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
 - ※ 장학금 신청자와 사무금융분야 종사자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 1 신청가능 금융기관 목록 ('23년도 1학기 기준)

| 기관명 | 코드 |
|---------------|-----|
| 건설공제조합 | 011 |
| ABL생명보험 | 012 |
| AIA생명보험 | 013 |
| AXA손해보험 | 014 |
|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| 015 |
| CMA CGM Kore | 016 |
| DGB생명보험 | 017 |
| DH저축은행 | 018 |
| HMM | 019 |
| HSBC은행 | 020 |
| IBK신용정보 | 021 |
| IBK연금보험 | 022 |
| IBK저축은행 | 023 |
| IBK캐피탈 | 024 |
| JT저축은행 | 025 |
| JT친애저축은행 | 026 |
| JT캐피탈 | 027 |
| KB국민카드 | 028 |
| KB손해보험 | 029 |
| KB손해사정 | 030 |
| KB신용정보 | 031 |
| KB증권 | 032 |
| KB캐피탈 | 033 |
| KB손보CNS | 034 |
| KCA손해사정 | 035 |
| KDB생명보험 | 036 |
| KDB캐피탈 | 037 |
| KG모빌리언스 | 038 |
| KIS정보통신 | 039 |
| KSNET | 040 |
| MG손해보험 | 041 |
| NH-Amundi자산운용 | 042 |
| NH농협중앙회 | 043 |
| NH농협캐피탈 | 044 |
| NH투자증권 | 045 |
| OK금융그룹 | 046 |
| PCA생명보험 | 047 |
| SAP코리아 | 048 |
| SGI신용정보 | 049 |
| SK매직 | 050 |
| SK증권 | 051 |
| 공공상생연대기금 | 052 |
| 교보생명보험 | 053 |
| 교보증권 | 054 |
| 금융감독원 | 055 |

| 기관명 | 코드 |
|----------------|-----|
| 금융보안원 | 056 |
| 농협하나로유통 | 057 |
| 대구은행 | 058 |
| 대상정보기술지부 | 059 |
| 대신증권 | 060 |
| 대한건설협회 | 061 |
| 더케이손해보험 | 062 |
| 더케이저축은행 | 063 |
| 동양네트웍스 | 064 |
| 동양생명보험 | 065 |
| 롯데카드 | 066 |
|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| 067 |
|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| 068 |
| 메이슨참조 | 069 |
| 메트라이프생명보험 | 070 |
| 미래신용정보 | 071 |
| 미래에셋생명보험 | 072 |
| 보험개발원 | 073 |
| 보험연수원 | 074 |
| 부산에큐온저축은행 | 075 |
| 비씨카드 | 076 |
|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| 077 |
| 삼성증권 | 078 |
| 삼일회계법인 | 079 |
| 상상인증권 | 080 |
| 생명보험협회 | 081 |
| 서민금융진흥원 | 082 |
| 서울보증보험 | 083 |
| 서울시태권도협회 | 084 |
| 신용보증재단(강원) | 085 |
| 신용보증재단(경기) | 086 |
| 신용보증재단(경북) | 087 |
| 신용보증재단(서울) | 088 |
| 신용보증재단(서울희망) | 089 |
| 소방산업공제조합 | 090 |
| 소프트웨어공제조합 | 091 |
| 손해보험협회 | 092 |
| 전북신용보증재단 | 093 |
| 신용회복위원회 | 094 |
| 신한금융투자 | 095 |
| 신한생명보험 | 096 |
| 신한신용정보 | 097 |
| 신한아이타스 | 098 |
| 신한카드 | 099 |
| 아주캐피탈 | 100 |

| 기관명 | 코드 |
|----------------|-----|
| 에듀온저축은행 | 101 |
| 에듀온캐피탈 | 102 |
| 에이스손해보험 | 103 |
|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 | 104 |
| 에이앤디신용정보 | 105 |
| 엔지니어링공제조합 | 106 |
| 예금보험공사 | 107 |
|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| 108 |
| 이크레더블 | 109 |
|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| 110 |
| 저축은행중앙회 | 111 |
|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| 112 |
| 전국렌터카공제조합 | 113 |
| 전국사무원대 | 114 |
| 전국새마을금고 | 115 |
|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| 116 |
| 전국택시공제조합 | 117 |
| 전국협동조합 | 118 |
|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| 119 |
| 처브라이프생명보험 | 120 |
| 케이프투자증권 | 121 |
| 코리아리저보험 | 122 |
| 코스콤 | 123 |
| 토요타파인설서비스코리아 | 124 |
| 통조림가공수협 | 125 |
| 티머니 | 126 |
| 푸본현대생명보험 | 127 |
| 하나FNI | 128 |
| 하나금융투자 | 129 |
| 하나생명보험 | 130 |
| 하나외환카드 | 131 |
| 하이투자증권 | 132 |
| 한국HP | 133 |
| 한국HSBC | 134 |
| 한국SGS그룹 | 135 |
| 한국거래소 | 136 |
| 한국공인중개사협회 | 137 |
| 한국교직원공제회 | 138 |
| 한국금융투자협회 | 139 |
| 한국기업평가 | 140 |
|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| 141 |
| 한국대부금융협회 | 142 |
| 한국렌탈 | 143 |

| 기관명 | 코드 |
|---------------|-----|
| 한국마이크로소프트 | 144 |
| 한국마스크사부 | 145 |
| 한국베링거인겔하임 | 146 |
| 한국싸스소프트웨어 | 147 |
| 한국시티은행 | 148 |
| 한국신용정보 | 149 |
| 한국신용카드결제 | 150 |
| 한국신용평가 | 151 |
| 한국신용평가정보 | 152 |
| 한국씨티은행 | 153 |
| 한국약학교육협의회 | 154 |
| 한국예탁결제원 | 155 |
| 한국오라클 | 156 |
| 한국은행 | 157 |
| 한국음악저작권협회 | 158 |
| 한국자산평가 | 159 |
| 한국정보산업연합회 | 160 |
|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| 161 |
| 한국증권금융 | 162 |
| 한국투자증권 | 163 |
| 한국해양진흥공사 | 164 |
| 한국화재보험협회 | 165 |
| 한화생명보험 | 166 |
| 한화손해보험 | 167 |
| 한화손해사정 | 168 |
| 현대상선 | 169 |
| 현대차증권 | 170 |
| 현대캐피탈 | 171 |
| 현대카드 | 172 |
| 현대커머셜 | 173 |
| 현대해상화재보험 | 174 |
| 협동조합 강원본부 | 175 |
| 협동조합 경인본부 | 176 |
| 협동조합 대구경북본부 | 177 |
| 협동조합 대전충남세종본부 | 178 |
| 협동조합 부울경본부 | 179 |
| 협동조합 서울본부 | 180 |
| 협동조합 제주본부 | 181 |
| 협동조합 충북본부 | 182 |
| 협동조합 호남본부 | 183 |
| 협동조합 충청본부 | 184 |
| 한국생명보험 | 185 |
| 한국저축은행 | 186 |
| 한국화재해상보험 | 187 |

| 기관명 | 코드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
| 광주 전남 | 무안농협 | 187 |
| | 운남농협 | 188 |
| | 청계농협 | 189 |
| | 일로농협 | 190 |
| | 함평농협 | 191 |
| | 천지농협 | 192 |
| | 선진농협 | 193 |
| | 진도농협 | 194 |
| | 서진도농협 | 195 |
| | 황산농협 | 196 |
| | 화원농협 | 197 |
| | 산이농협 | 198 |
| | 옥천농협 | 199 |
| | 여수농협 | 200 |
| | 여수원예농협 | 201 |
| | 광주원예농협 | 202 |
| | 나주배원예농협 | 203 |
| | 신안농협 | 204 |
| | 광양농협 | 205 |
| | 광양원예농협 | 206 |
| 대전 충남 | 서부농협 | 207 |
| | 서대전농협 | 208 |
| | 대전원예농협 | 209 |
| | 남대전농협 | 210 |
| | 충절로신협 | 211 |
| 부산 울산 경남 | 둔산신협 | 212 |
| | 금정농협 | 213 |
| | 기장농협 | 214 |
| | 남부산농협 | 215 |
| | 대형기전지인망수협 | 216 |
| | 동래농협 | 217 |
| | 해운대수협 | 218 |
| | 거제수협 | 219 |
| | 장승포농협 | 220 |
| | 전주농협 | 221 |
| 전북 | 삼례농협 | 222 |
| | 대포수협 | 223 |

* 전국새마을금고 중 해당지역

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|
| 서울 | 공덕 | 258 |
| | 서울동부 | 259 |
| 인천 | 서인천 | 260 |
| | 남부 | 261 |
| 대구 | 성북 | 262 |
| | 송내 | 263 |
| 경기 | 성지 성남중부주례 | 264 |
| | 성남중부 | 265 |
| | 주례 | 266 |
| 세종충남 | 합동 | 267 |
| | 중부 | 268 |
| 전북 | 반여2.3동 | 269 |
| | 해운대중앙 | 270 |
| | 남부중앙 | 271 |
| | 대연중앙 | 272 |
| | 사직3동 | 273 |
| 부산 | 사직1동 | 274 |
| | 구서2동 | 275 |
| | 금정 | 276 |
| | 채송동 | 277 |
| | 주례 | 278 |
| | 연산계월 | 279 |
| | 연계중앙 | 280 |
| | 연산6동 | 281 |
| | 부전1동 | 282 |
| | 거제4동 | 283 |
| | 연산로터리 | 284 |
| | 가야1동 | 285 |
| | 부산대병원 | 286 |
| 연산3동 | 287 | |
| 연지 | 288 | |
| 태종대 | 289 | |

참고 2

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

|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종사자 인 적 사 항 | ① 성 명 | 김 푸 른 | | ② 주민번호(앞 7자리) | 111111-1***** |
| | ③ 원사업장명 | 롯데카드(예시) (원사업자 사업장 작성) | | ④ 신청자와 관계 | 부 |
| | ⑤ 근무기간 (신청시작일 기준) | 20xx. x. x. ~ 2022. 12. 17. | | ⑥ 소속업체명 | ABC 개발 |
| | ⑦ 근무처 코드 | 062(예시) | | ⑧ 근무지 연락처 | 02-000-0000 |
| | ⑨ 고용 형태 | 기 간 제 | 시 간 제 | 파견근로 | 간접고용 |
| | O | | | | |
| <p>상기 본인은 사무금융분야(제2금융권)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며,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금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장학금 신청자명: 김 초 록 (서명 또는 인)</p> | | | | | |
| <p>< 작성 시 참고 사항 ></p> <p>③ 원사업장: 사무금융분야 종사자가 근무 중인 곳 ※ 하도급업 발주를 하는 최상위 단계의 사업장명 기재(사무금융분야 2금융권 등)</p> <p>⑤ 근무기간: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사업장(③) 최초 근무일 ~ 푸른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까지 기재 ※ 고용승계에 따라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,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재)</p> <p>⑥ 소속업체: 사무금융분야 종사자가 실제 소속된 곳 ※ 원사업장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③, ⑥번 동일하게 기재</p> <p>⑦ 근무처 코드: 원사업장(③)을 기준으로 [참고1. 금융기관 목록]에서 확인되는 코드 입력 (미기재 또는 오기재 시 심사 제한)</p> <p>⑨ 고용형태: 종사자(①)와 원사업장(③)의 관계를 확인하여 기재(선택지에 없는 고용형태의 경우, 기타에 고용형태 기재) ※ 간접고용: 원사업장과 원·하청 관계에 있는 고용형태</p> <p>예) 장학금 신청자(김초록)의 부친(김푸른)은 ABC 개발 소속으로, 20xx. x. x.부터 현재까지 롯데카드(062)에서 기간제로 종사하는 경우</p> | | | | | |

5.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

1. 사업 목적

- 2022년 발생한 자연 재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 지역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지원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212백만 원(200만 원 × 53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2022년 발생한 자연 재난*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정의 대학생
 - ※ 장학금 신청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(피해사실확인서 상 **피해자가 부·모(미혼), 배우자(기혼) 또는 본인**이어야 하며,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 - *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연 재난은 아래 재난 상황 및 지역에 한함

| 해당 재난 | 특별재난지역 |
|----------|---|
| 경북·강원 산불 | ○(경북) 울진군 ○(강원) 강릉시, 동해시, 삼척시 |
| 중부권 집중호우 | ○(서울) 영등포구, 관악구, 동작구, 서초구, 강남구 개포 1동 ○(경기) 성남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, 의왕시 고천동·청계동, 용인시 동천동 ○(강원) 횡성군, 홍천군 ○(충남) 부여군, 청양군, 보령시 청라면 |
| 태풍 '힌남노' | ○(경북) 포항시, 경주시 ○(울산) 울주군 온산읍·두서면 ○(경남) 통영시 옥지면·한산면, 거제시 일운면·남부면 |
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인원: 53명

6. 우미희망재단

1. 사업 목적

-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총 300백만 원
 - 생활비 장학금: 200백만 원(200만 원 × 50명 × 2개 학기)
 - 꿈이름 장학금: 50백만 원(100만 원 × 50명 × 1개 학기('23-1학기))
 - 인재육성 프로그램: 50백만 원(총 2회 이내 개최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
 - 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, 장해판정(1~14급)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
 - ※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(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 - ※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(산정 가구원 포함 불필요)
 -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자(총 2회)
 - ※ '23년 5월 중 1일, 8월 중 1박 2일 개최 예정(일정 변동 가능)
 - ※ 세부 일정, 장소 등은 합격자 대상으로 추가 안내 예정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75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50명
- 지원내용
 -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 - 꿈 이름 장학금 100만 원 지원('23-1학기 정액 지원)

-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진로·비전 탐색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(세부사항 [참고1] 자료 참조)
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3년 1학기 ~ '23년 2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70점) + 성적(30점) + 가산점*(5점)
 - * 건설 관련 산재일 경우 가산점 부여(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상 소속 사업장의 업종(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사업장 조회 결과)을 기준으로 판단함, 기부처 최종 확인)
- 동점자 처리기준 : 산업재해사망자 자녀 > 산업재해 장해등급 고등급자(1급→14급 순) > 산업재해 근로자가 본인인 경우 >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계속장학생 선정기준
 - '23-1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석(5월, 8월 예정) 및 꿈 이름 중간 보고서 제출
 - ※ 코로나19 확진 등 질병이나 사고, 채용 관련 면접 일정 등으로 불참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, 참석 인정 여부 기부처와 협의하여 결정
 - ※ 계속장학생 선정기준 미충족 시 '23-2학기 계속장학생 탈락
- 작성서류
 - 자기소개서(꿈 이름 계획서)
 - ※ [참고2]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
- 제출서류
 - 보험급여 지급확인원
 - ※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,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
 - 꿈 이름 보고서
 - 중간 보고서('23. 7. 31.까지 제출), 결과 보고서('23. 10. 31.까지 제출)
 - ※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출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
 - 가족관계증명서(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만 제출)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1

인재육성 프로그램 개최 계획(안)

1. 목적

- '23-1학기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대상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업재해 가정 대학생들의 진로·비전 탐색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

2. 프로그램 개최 계획

개요

- 주제: “푸른등대와 함께 그리는 나의 미래”
- 일정: 2023년 5월, 8월 중 1회씩 총 2회 이내 개최 예정
- 장소: 프로그램 개최에 적합한 장소 선정
- 사업예산: 총 5천만 원(2회 이내 개최)

주요 프로그램(안)

- 진로·비전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, 미래 설계 프로그램
- 자아존중감 향상, 문제해결 능력 향상 활동
-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(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교육 등)

참고2

자기소개서(꿈 이룸 계획서)

○ 꿈 이룸 계획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<p>1. 2023년 이내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선정 사유(500자 이내)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color: gray;">2023년 12월 결과 보고 시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(예시) 토익 800점 달성,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, 학기 성적 4.5점 만점 달성 등</p> |
| <p>2.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(500자 이내)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color: gray;">꿈 이룸에 도움이 되도록 2023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</p> |
| <p>3. 꿈 이룸 장학금(100만 원) 사용 계획(500자 이내)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color: gray;">(예시) ○ 전공 서적 구입비 20만 원(5만 원 x 4권) ○ 시험 응시료 10만 원(5만 원 x 2회) ○ 인터넷 강의로 30만 원 ○ 실습 및 실험 재료 구입 40만 원 등</p> |

7. 유지웅 기부장학금

1. 사업 목적

- 개인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**10백만 원**(200만 원 × 5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**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**
 - ※ 전문대,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**체육계열 전공***이면서 **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**
 - *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(예시: 태권도학과)
 - ※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수해자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**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**
- 지원인원: **5명**
- 지원내용: **학기당 200만 원 지원**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**1개 학기**(‘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**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**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8. 정인욱 학술장학재단

1. 사업 목적

-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
 - 총 70백만 원(250만 원 × 28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**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**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**가정 외 보호시설*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**
 - *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(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,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)
 - ※ 푸른등대 KOSAF 기부펀드 유형 I 기수해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**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**
- 지원인원: **28명**
- 지원내용: **학기당 250만 원 지원**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**1개 학기**(‘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**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**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*
 - * 입소확인서,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(택 1)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9. 한국가스공사

1. 사업 목적

- 에너지 전공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60백만 원(200만 원 × 8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소속대학 인근* 주거시설**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인 에너지 전공자
 - *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·군일 경우 지원
 - ** 기숙사, 전(월)세 원룸, 하숙집, 고시원 등(단,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)
 - ※ 에너지 전공자 기준: 신청자 학과명에 '에너지, 기계, 전기, 화학공학(화공), 토목, 건축, 전산, 자원, 지질' 단어가 포함된 자
 - ※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8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 - ※ [참고]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(대학소재지 기준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 + 가산점*(1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주거시설이 월세, 하숙집, 고시원인 자>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> 성적상위자> 연소자
 - * 주거시설이 월세, 하숙집, 고시원인 경우 가산점 부여

- 제출서류: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,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
 - ※ 신청시작일('22. 12. 17.)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[참고2]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,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(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)
-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(상세)
 - 전(월세) 주거 유형: 임대차계약서* 1부 + 주민등록등본 1부
 - ※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
 - 기숙사 주거 유형: 입실확인서** 1부 + 주민등록등본 1부
 - 하숙집(고시원 등) 주거 유형: 입실확인서** 1부 + 하숙집(고시원 등)의 사업자등록증 1부 + 주민등록등본 1부
 - *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(미혼) 본인 또는 부모, (기혼) 본인 또는 배우자
 - **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에 한함
 - ※ 단,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(주민등록등본) 제출 불필요 (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)
 - ※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- 심사 사항
 -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(시·군 기준)해야 함
 -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*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(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)
 - ③ '23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'23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
 -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
 - * 대학생 명의 등본상 부,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 1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

| 권역 |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(대학 소재지 기준) | 선발인원(명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대경권, 강원권 |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, 강원도 | 16 |
| 수도권 |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 | 16 |
| 충청권 | 대전광역시, 세종시, 충청도 | 16 |
| 호남권, 제주권 | 광주광역시, 전라도, 제주도 | 16 |
| 동남권 |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| 16 |
| 합 계 | | 80 |

※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참고 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

- 신청자 인적사항
 - 이 름 : 홍길동
 - 소속대학 : 기부장학대학교
 - 학 과 : 장학학과

○ '23-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정사항 포함)

1. **임차유형(택 1)**
 전(월세) 기숙사 하숙집(고시원) 기타 ()
2. **월 주거(예상) 비용(택 1)**
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~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
 ※ 학기/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
3. **임대차계약서(입실확인서 등)의 임차인(택 1)**
 -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: 본인 부친 모친
 -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: 본인 배우자
4. **기타사항**
 -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: 00시 00구 00로 예시: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)
 - 임대차계약서 주소(예정포함): 00시 00구 00로 예시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)
 -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(예정포함):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

- ※ **유의사항**
-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.
-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,
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____ 월 ____ 일

신청자 : _____ (서명)
※ 본인 서명 후,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

10. 한국전력공사

1. 사업 목적

- 전기공학·에너지 전공 대학생 대상 **생활비 지원**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8백만 원(200만 원 × 27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**국내 4년제** 및 **전문 대학교 재학생**
(단, 국내 4년제 대학의 4학년 이상은 제외)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현재 잔여 정규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학자금 지원구간 **3구간 이하**이며 학과명에 아래 단어가 포함된 자
 - 학과명 포함 단어: 전기, 에너지
 - ※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
 - ※ 푸른등대 한국전력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해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**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** 이상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인원: **27명**
- 지원내용: **학기당 200만 원 지원**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**2개 학기**('23년 1학기 ~ '23년 2학기)
- 평가기준
 - (1차) **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**, 2배수 선발
 - (2차) **생활환경(50점)* + 경진대회 입상경력(10점)****
 - * 생활환경: 장애인, 탈북가정(새터민), 가정 외 보호출신, 학생가장,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(각 항목 당 10점 부여)
 - ** 상장 및 관련서류: 전기·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입상 증빙(최우수상·금상(대상) 10점, 우수상·은상 5점, 기타 입상 3점) (기부처 최종 확인)

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사회배려 대상자(생활환경) > 경진대회 입상경력 > 연소자
- 제출서류: 사회배려계층(생활환경) 및 경진대회 입상경력 확인 서류(선택)
 - ※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**가족관계**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 - **장애인**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
 - ※ 장애인 인정 범위: 장학금 신청자 본인
 - **탈북 가정(새터민)**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 - **가정 외 보호출신***: 입소확인서(재원증명서, 퇴소사실증명서,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등)
 - *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시설의 경우(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,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)
 - **학생가장**: 가족관계증명서
 - ※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(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), 기혼자 제외
 - **다문화 가정**
 - ※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, 기혼자 제외
 - 한국 국적 취득 전: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
 - 한국 국적 취득 후: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
 - **상장 및 관련 서류**: 전기·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
- 비교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1. 한국토지주택공사

1. 사업 목적

-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2백만 원(200만 원 × 51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직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임대주택 거주*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

- * 1)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
- 2)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
 - ① (미혼자)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,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)
 - ② (기혼자)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
- ※ LH 임대주택여부(계약자명, 계약자 주민등록번호, 계약자 핸드폰번호,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) 기부처 최종 확인
- ※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,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(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,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)
- ※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,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
- ※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(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, 거주 중으로 간주),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
- ※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

- 성적기준 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내용: 학기당 2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인원: 51명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 : 계약자가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본인인 경우* >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 - *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(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,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)
- 제출서류
 - (필수)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
 - ※ 단,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(주민등록등본) 제출 불필요 (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)
 - (선택)
 - 한부모가족 증명서(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
 -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*(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
 - * 입소확인서,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(택 1)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2. 한국투자공사

1. 사업 목적

- 가정 외 보호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00백만 원(250만 원 × 20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**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신입생**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- 신청자격: **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, 보호종결 및 연장보호 중인 자 등 가정 외 보호 출신자**
 - ※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(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,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)
- 계속장학생 성적기준 ※ 선발 시 성적기준 없음(신입생 선발)
 - 직전 정규학기 **백분위 7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** 이수
- 지원인원: 2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2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3년 1학기 ~ '23년 2학기)
- 평가기준: **가계소득(70점) + 자기소개서(30점) + 가산점*(5점)**
 - * 장애인 또는 미혼모·미혼부인 경우 가산점 부여
 - 동점자 처리 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
 -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(필수제출서류, 택1)
 -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: 입소확인서, 채용증명서, 출신확인서
 - 가정위탁: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-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 (선택제출서류)
 - *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(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)
- 미혼모·미혼부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(선택제출서류)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참고 자기소개서

○ 평가기준

| 항목 | 진솔성 | 논리성 | 성실성 | 성장가능성 | 목적부합성 | 합계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배점 | 20 | 20 | 20 | 20 | 20 | 100 |
| 점수 | | | | | | |

○ 채점기준

| 채점기준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점수 | 20~18 | 17~15 | 14~12 | 11~9 | 8~5 |

○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
13. 홈앤쇼핑 홈앤스마일(유형 I)

1. 사업 목적

- 방송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총 47백만 원(100만 원 × 47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, 방송* 전공자
 - * 신청자 학과명에 '방송' 또는 '미디어'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
 - ※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총 47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1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다자녀 가정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비교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4. 홈앤쇼핑 홈앤스마일(유형 II)

1. 사업 목적

- 택배업 종사자(택배기사)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총 40백만 원(100만 원 × 4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
 - ① 택배업* 1년 이상**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
 - * CJ대한통운, 롯데택배(롯데글로벌로지스),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
 - ** 1)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(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 또는 휴직 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)
 - 2)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
 - CJ대한통운, 롯데택배,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, 신청 시 해당 회사의 재직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(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)
 - ※ 신청 시 작성한 택배기사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(기부처 확인)
 - ※ 장학금 신청자가 택배기사 본인이 아닌 경우, 신청자와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(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 - ※ 푸른등대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해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총 40명

- 지원내용: 학기당 1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다자녀 가정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5. 홈앤쇼핑 홈앤스마일(유형 III)

1. 사업 목적

- 소비자학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총 30백만 원(100만 원 × 3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입생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이며, 소비자학* 전공자
 - * 신청자 학과명에 '소비자'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
 - ※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해자는 선발 제외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총 3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10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다자녀 가정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16. KDB나눔재단

1. 사업 목적

- 취업 준비생·예체능 계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175백만 원(250만 원 × 35명 × 2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3학년* 재학생
 - ※ 전문대,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* 편입생 제외,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 완료자이며, 학사원장 상 3학년인 경우
- 신청자격: 선발 분야별(일반분야, 특기분야)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인재육성 프로그램* 참가가 가능한 자
 - * 자기계발, 진로설정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진행('23년 5월 중 1박 2일 KDB나눔 재단 주최로 진행 예정(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최 등으로 진행 방식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))

| 선발 분야 | 일반 분야(27명) | 특기 분야(8명) |
|------------|---|--|
| 선발 자격 (공통) | ○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* 대학생 * 장애인, 새터민, 가정 외 보호출신, 한부모 가정, 학생가정, 다문화 가정 | |
| 전공 분야 | ○ 전공 제한 없음 | ○ 예체능 계열 전공자* * 음악, 체육, 미술, 공연예술 등 관련 학과 ('23년도 대학별 학과 계열 분류체계에 의함) |
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 - ※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
- 지원내용: 학기당 2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인원: 35명(일반분야: 27명, 특기분야: 8명)
- 지원기간: 2개 학기('23년 1학기 ~ '23년 2학기)
- 평가기준(분야별 선발)
 - (1차)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, 3배수 선발
 - (2차) 자기소개서(100점) + 생활환경(5점)*
 - * 생활환경: 장애인, 탈북가정(새터민), 가정 외 보호출신, 한부모가정, 학생가정, 다문화 가정에 해당하는 자(항목 점수 5점)

| 구분 | 1차 선발 인원 | 2차 최종 선발 인원*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일반 분야 | 81명 (3배수) | 27명 |
| 특기 분야 | 24명 (3배수) | 8명 |
| 합계 | 105명 | 35명 |

- * 자기소개서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최종 선발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
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> 사회배려계층(생활환경)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※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, 2차 심사에 모두 적용

□ 제출서류: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(택1)*

- *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
- ※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**가족관계**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'을 기준으로 함(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- **장애인**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
- ※ 장애인 인정 범위: 장학금 신청자 본인
- **탈북 가정(새터민)**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- **가정 외 보호출신***: 입소확인서(재원증명서, 퇴소사실증명서,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등)

*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시설의 경우(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,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)

- **한부모 가정***: 한부모가족 증명서
- *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, (「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) 기혼자 제외

- **학생가장**: 가족관계증명서
- ※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(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), 기혼자 제외

- **다문화 가정**
- ※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, 기혼자 제외
- 한국 국적 취득 전: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
- 한국 국적 취득 후: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

□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

| | |
|----|-------|
| 참고 | 자기소개서 |
|----|-------|

○ 평가기준

| 항목 | 진술성 | 논리성 | 성실성 | 성장가능성 | 목적부합성 | 합계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배점 | 20 | 20 | 20 | 20 | 20 | 100 |
| 점수 | | | | | | |

○ 채점기준

| 채점기준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점수 | 20~18 | 17~15 | 14~12 | 11~9 | 8~5 |

○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
17. KOSAF기부펀드(유형 II)

1. 사업 목적

-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

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(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)의 기부금으로 조성됨

2. 사업 내용

- 지원규모: 30백만 원(150만 원 × 20명 × 1개 학기)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※ 신·편입생 제외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
- 신청자격: 소속대학 인근* 주거시설**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
 - *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·군일 경우 지원
 - ** 기숙사, 전월세 원룸, 하숙집, 고시원 등(단,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)
 - ※ KOSAF기부펀드II유형 기수혜자 제외(재단 확인)
- 성적기준: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- 지원인원: 20명
- 지원내용: 학기당 150만 원 지원(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)
- 지원기간: 1개 학기('23년 1학기)
- 평가기준: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, 평가 점수 높은 순
 - 동점자 처리기준: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> 성적상위자 > 연소자
- 제출서류: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,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
 - ※ 단, 신청시작일('22. 12. 17.)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[참고2] 주거 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,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요청 예정(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)

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(상세)

- 전(월세) 주거 유형: 임대차계약서* 1부 + 주민등록등본 1부
 - ※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
- 기숙사 주거 유형: 입실확인서** 1부 + 주민등록등본 1부
- 하숙집(고시원 등) 주거 유형: 입실확인서** 1부 + 하숙집(고시원 등)의 사업자등록증 1부 + 주민등록등본 1부
 - *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(미혼) 본인 또는 부모, (기혼) 본인 또는 배우자
 - **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에 한함
 - ※ 단,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(주민등록등본) 제출 불필요 (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)
 - ※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

심사 사항

-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(시·군 기준)해야 함
-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*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(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)
- ③ '23년도 1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'23년 6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
 -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
 - *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,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

- 비고: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

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

- 신청자 인적사항
 - 이 름 : 홍길동
 - 소속대학 : 기부장학대학교
 - 학 과 : 장학학과

○ '23-1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정사항 포함)

1. 임차유형(택 1)

- 전(월세) 기숙사 하숙집(고시원) 기타 ()

2. 월 주거(예상) 비용(택 1)

-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~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
 ※ 학기/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

3. 임대차계약서(입실확인서 등)의 임차인(택 1)

-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: 본인 부친 모친
 -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: 본인 배우자

4. 기타사항

-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: 00시 00구 00로(예시: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)
 - 임대차계약서 주소(예정포함): 00시 00구 00로(예시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)
 -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(예정포함): 20xx. xx. xx. ~ 20xx. xx. xx.

※ 유의사항

-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.
-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,
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____ 월 ____ 일

신청자 : _____ (서명)
 ※ 본인 서명 후,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

참고 2 하숙집 · 고시원 확인서 (예시)

하숙집 · 고시원 확인서

| 1. 하숙집 · 고시원 주인(임대인) 인적사항 | | | |
|--|--|----------|------|
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(앞 7자리 기재) | 주소 | 연락처 |
| | 590415 - 2(예시) | | |
| 2. 학생(임차인) 인적사항 | | | |
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(앞 7자리 기재) | 주소 | 연락처 |
| | 920319 - 1(예시) | | |
| 3. 하숙(입실) 현황 | | | |
| 하숙(입실)기간 | 년 월 일 ~ 현재 | | |
| 총 하숙비(입실료) | 월금 총 원 | 숙박비(입실료) | 월금 원 |
| | | 식대 | 월금 원 |
|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· 고시원에 하숙(입실)함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확인자 (하숙집 · 고시원 주인) 주 소 : 성 명 : (인) 사업자등록번호 : | | | |
|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| | | |
| 비고 |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, 임대계약서, 재산세납부영수증,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| | |

* 목적에 맞게 양식(내용)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

참고 3

기숙사 입주확인서 (예시)

(제20 - 호)

○○○○○기숙사
입주확인서

| | | | |
|----|----|-----|--|
| 성명 | | 학교명 | |
| 호실 | 관호 | 연락처 | |

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○○○○○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인자 성명: (서명)

○○○○○기숙사 관장 (직인)

* 목적에 맞게 양식(내용)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

붙임1

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. 건설근로자공제회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출서류 없음 ※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| | | | | | | | |
| 2. 넥슨코리아 | 해당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공 관련 경진대회 입상경력 증빙서류 | | | | | | | | |
| 3. 말남장학금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경여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※ 선발대상자의 1.5배 내외로 2월 중 별도 요청 예정(신청 시 제출 불필요) | | | | | | | | |
| 4.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※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종사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| | | | | | | | |
| 5.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피해사실확인서 <특별재난지역 및 기간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경북·강원 산발</th> <th>중부권 집중호우</th> <th>태풍 '힌남노'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난 기간</td> <td>'22.3월</td> <td>'22.8월</td> <td>'22.9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피해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| 구분 | 경북·강원 산발 | 중부권 집중호우 | 태풍 '힌남노' | 재난 기간 | '22.3월 | '22.8월 | '22.9월 |
| 구분 | 경북·강원 산발 | 중부권 집중호우 | 태풍 '힌남노' | | | | | | | |
| 재난 기간 | '22.3월 | '22.8월 | '22.9월 | | | | | | | |
| 6. 우미희망재단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-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,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가족관계증명서(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제출) ※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| | | | | | | | |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7. 유지웅 기부장학금 | • 제출서류 없음 | |
| 8. 정인욱 학술장학재단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소확인서,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(택1) |
| 9. 한국가스공사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(월)세 주거 형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대차계약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(미혼) 본인 또는 부모, (기혼) 본인 또는 배우자 ※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기숙사 주거유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실확인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에 한함 하숙집(고시원 등) 주거유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실확인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에 한함 하숙집(고시원 등)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(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)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 시작일(22. 12. 17.)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(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) |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 |
|--------------|------|--|
| 10. 한국전력공사 | 해당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장애인 인정 범위: 장학금 신청자 본인 탈북 가정(새터민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정 외 보호출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소확인서(재원증명서, 퇴소사실증명서,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) 학생가장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관계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(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), 기혼자 제외 다문화 가정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 국적 취득 전: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 국적 취득 후: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*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, 기혼자 제외 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상장 및 관련 서류: 전기·에너지 분야 관련 경진대회 입상 증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|
| 11. 한국토지주택공사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(주민등록등본) 제출 불필요 |
| | 해당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부모가족 증명서(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(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소확인서,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(택1) |
| 12. 한국투자공사 | 필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(택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, 재원증명서, 출신확인서 가정위탁·가정위탁보호확인서 |
| | 해당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(부모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) 미혼모·미혼부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3. 홈앤쇼핑 홈스마일 유형 I | • 제출서류 없음 |
| 14. 홈앤쇼핑 홈스마일 유형 II | • 제출서류 없음 ※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|
| 15. 홈앤쇼핑 홈스마일 유형 III | • 제출서류 없음 |
| 16. KDB나눔재단 | 필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 (택1) ※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제외 • 장애인* -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* 장애인 인정 범위: 장학금 신청자 본인 • 탈북 가정(새터민)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• 가정 외 보호출신 - 입소확인서(재원증명서, 퇴소사실증명서,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등) • 한부모* 가정 - 한부모가족 증명서 *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, (「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) 기혼자 제외 • 학생가장* - 가족관계증명서 *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(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), 기혼자 제외 • 다문화 가정* - 한국 국적 취득 전: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- 한국 국적 취득 후: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*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, 기혼자 제외 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※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|

| 기부처 | 제출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7. KOSAF기부펀드 유형 II | 필수 •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- 전(월)세 주거 형태 · 임대차계약서* *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(미혼) 본인 또는 부모, (기혼) 본인 또는 배우자 ※ 가족관계는 '23-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(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) - 기숙사 주거유형 · 입실확인서* *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에 한함 - 하숙집(고시원 등) 주거유형 · 입실확인서* *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에 한함 · 하숙집(고시원 등)의 사업자등록증 • 주민등록등본 ※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(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절차 참조) •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- 신청 시작일(22. 12. 17.)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※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(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) |
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(2022. 12. 17.)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
- ※ 기부처별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, 페이지 전체, 신청 시작일(2022. 12. 17.)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일이 확인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(컴퓨터 화면 캡처 인정 불가)
- ※ 장학금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

한국투자공사

○ 평가기준

| 항목 | 진솔성 | 논리성 | 성실성 | 성장가능성 | 목적부합성 | 합계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배점 | 20 | 20 | 20 | 20 | 20 | 100 |
| 점수 | | | | | | |

○ 채점기준

| 채점기준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점수 | 20~18 | 17~15 | 14~12 | 11~9 | 8~5 |

○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
KDB나눔재단

○ 평가기준

| 항목 | 진솔성 | 논리성 | 성실성 | 성장가능성 | 목적부합성 | 합계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배점 | 20 | 20 | 20 | 20 | 20 | 100 |
| 점수 | | | | | | |

○ 채점기준

| 채점기준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점수 | 20~18 | 17~15 | 14~12 | 11~9 | 8~5 |

○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
말남장학금

평가기준

| 항목 | 진솔성 | 논리성 | 성실성 | 성장가능성 | 목적부합성 | 합계 |
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배점 | 20 | 20 | 20 | 20 | 20 | 100 |
| 점수 | | | | | | |

채점기준

| 채점기준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점수 | 20~18 | 17~15 | 14~12 | 11~9 | 8~5 |

자기소개서 작성 항목

| |
|---|
| 1. 성장과정 및 가치관(1,000자 이내) |
| 2. 자신이 이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적합한 이유(500자 이내) |
| 3.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(1,000자 이내) ※ 어학성적, 자격증 취득, 수상실적 포함 |
| 4.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(500자 이내) ※ 봉사활동 실적 포함 |
| 5. 자유기재(500자 이내) ※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|

붙임3

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
선발 업무처리기준(안)

2023년 1학기
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
선발 업무처리기준(안)

2022. 12.

인 재 육 성 장 학 부



'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사항

I 사업 개요

1. 목적

-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
-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

2. 근거

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사업) 및 제20조(기부금의 모집·접수)
- 「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」 제15조(기부금품 운영위원회)

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1.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

3. 추진 일정

| 업무내용 | 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| '22. 12. 16.(금) ~ 12. 26.(월) |
|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| '22. 12. 17.(토) 00:00 ~ '22. 12. 26.(월) 18:00 |
| 심사자료 준비 (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) | '22. 12. 27.(화) ~ '23. 2. 23.(목) |
| 장학생 심사 | '23. 2. 24.(금) ~ 3월 말 |
|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| '23. 3월 말 |

※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,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

※ 심사 기준일: 심사 시작일(2월 24일(금))

*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<http://www.kosaf.go.kr>)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

4. '23년 1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

(단위: 명, 백만 원)

| 유형 | 기부처 | 선발대상 | 선발인원 | 장학금액(학기당) | 전체예산('23-1예산) | 지원기간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생활비 | 1. 건설근로자공제회 |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| 519 | 1 | 519(519) | 1개 학기('23-1) |
| | 2. 넥스코리아 | 新 IT·게임 관련 학과 재학생 | 63 | 2 | 252(126) | 2개 학기('23-1~2) |
| | 3. 말남장학금 | 취경여고 졸업생 | 10 | 2 | 20(20) | 1개 학기('23-1) |
| | 4. 사무금융유분투자재단 |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| 40 | 2 | 80(80) | 1개 학기('23-1) |
| | 5.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| 新 자연재난 피해 가정의 대학생 | 53 | 2 | 212(106) | 2개 학기('23-1~2) |
| | 6. 우미희망재단 | 新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자녀 | 50 | (1학기) 3 (2학기) 2 | 250(150) | 2개 학기('23-1~2) |
| | 7. 유지용 기부장학금 |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| 5 | 2 | 10(10) | 1개 학기('23-1) |
| | 8. 정인옥 학술장학재단 | 新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| 28 | 2.5 | 70(70) | 1개 학기('23-1) |
| | 9. 한국가스공사 |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전공 대학생 | 80 | 2 | 160(160) | 1개 학기('23-1) |
| | 10. 한국전력공사 | 전기, 에너지 전공 대학생 | 27 | 2 | 108(54) | 2개 학기('23-1~2) |
| | 11. 한국토지주택공사 |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| 51 | 2 | 102(102) | 1개 학기('23-1) |
| | 12. 한국투자공사 |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신입생 | 20 | 2.5 | 100(50) | 2개 학기('23-1~2) |
| | 13.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 I | 방송 전공 대학생 | 47 | 1 | 47(47) | 1개 학기('23-1) |
| | 14.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 II |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| 40 | 1 | 40(40) | 1개 학기('23-1) |
| | 15.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 III | 소비자학 전공 대학생 | 30 | 1 | 30(30) | 1개 학기('23-1) |
| | 16. KDB나눔재단 | 저소득층 또는 사회배려계층 ※ 단 특기분야는 예제능 전공자 | 35 | 2.5 | 175(87.5) | 2개 학기('23-1~2) |
| | 17. KOSAF기부펀드 유형 II |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| 20 | 1.5 | 30(30) | 1개 학기('23-1) |
| 합 계 | | | 1,118 | - | 2,205(1,681.5) | |

II 공통 선발 기준

1. 학생 신청

□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

- '22. 12. 17.(토) 00:00 ~ '22. 12. 26.(월) 18:00까지
 - ※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마감일 제외)
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

□ 서류제출

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**소득확인 서류** 제출 및 가구원 동의
 - (서류제출) 신청 완료 후 1일~2일(휴일 제외) 후에 누리집에 서류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·선택서류 제출
 - ※ 확인 경로: 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> 장학금> 장학금 신청> 서류제출 현황
 - (가구원동의)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·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
 - ※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
 - ※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,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
-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
 -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

2. 대학 추천

-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, **이수 학점, 성적, 학적**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(대학 관리자포털)

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0조의2(자료 제출의 요청)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0.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: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

- 대학 학사·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(심사 이전) 등록 완료
 - ※ **학사정보,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 진행**

□ 정보 제공방식

-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[학사정보관리]와 [수납원장관리]에서 등록
-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

3. 대상자 선정

□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

-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·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
- 장학금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
 - ※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
 - ※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

□ 장학생 심사

-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**소득,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**(자기소개서 등) 등을 진행하여 **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**
- 성적이 Pass/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**최근 학기**를 직전학기로 적용
-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/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**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**
-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**중복 지원 불가**(신규,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)
- 1·2차 심사 완료 후,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

-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(재외국민 특별전형 'N' 입력) 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
- 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제외 처리

| 구 분 | 평가항목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차 | 1단계 | ○ 적격여부 확인: 선발자격조건* 및 서류 확인 |
| | 2단계 | ○ 가계소득 평가: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○ 성적 평가: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- 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× 100 |
| 2차 | ○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| |

- * 선발자격조건: 기부처별 신청자격, 성적, 소득수준, 이수학점, 학적상태 등 심사
- ※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'23-1학기'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를 기준으로 함(단, 기초/차상위/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- ※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처에 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4. 중복지원 방지

□ 기본 취지

-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(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)
- ※ 등록금 범위: 필수경비(입학금, 수업료) + 선택경비

□ 중복지원여부 확인

-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
- ※ 단,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

5. 장학금 지급

□ 장학금 유형

- 생활비 무상보조, 정액 지원

□ 장학금 지급 방식

-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,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6. 사후 관리

□ 장학금 환수

-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 -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
 □ 제2조(정의)
 4. '공공재정'이란 공공기관이 조성, 취득하거나 관리, 처분,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.
 □ 제8조(부정이익등의 환수)
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(이하 "부정이익등"이라 한다)를 환수하여야 한다.
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□ 장학금 반환

-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, 질병, 출산, 어학연수,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, 자퇴, 제적, 타 대학 편입, 재입학,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,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
 -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
 - ※ 장학금 미반환 시,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
-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(성적 및 이수학점 등)에 미충족될 경우
 -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
 - ※ 단,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- 반환대상 금액
 -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
 -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

| 반환사유 발생일* | 반환기준 | 반환 금액 산정(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학기 개시일*부터 30일까지 |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| $2,600,000\text{원} \times 5/6 = 2,166,666\text{원}$ |
|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| $2,600,000\text{원} \times 2/3 = 1,733,333\text{원}$ |
|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| $2,600,000\text{원} \times 1/2 = 1,300,000\text{원}$ |
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 반환금 없음 |

*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
 ※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*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
 * '22-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중 국고금관리법 제47조2항에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 처리가능

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(대학 공문 제출 필수)

-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, 본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,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

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(대학 공문 제출 필수)

-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, 본인의 중대한 질병, 사망, 사고, 지진·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,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

※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·반환 예외처리 신청서(사유 등 기재)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

※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. 만일,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.

※ 반환 제외자는 반환 제외 승인일 기준 1년 이내 푸른등대 장학사업 신청 불가

7. 자기소개서 심사

심사위원 위촉

-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
-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
- 위촉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

기능

-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
-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,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대체

임기

-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

수당

-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- ※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

8. 기타 공통사항

선발기준 우선순위

-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,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

발생이자 처리

-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

참고 1. 장학생 선발 소득·성적 배점표
 2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
 3. 소득확인 제출서류
 4. 장학금 환수·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

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·성적 배점표

□ 가계소득(60점) + 성적(4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60 | 57 | 54 | 51 | 48 | 45 | 42 | 39 | 36 |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실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
|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
| 점수 | 40 | 상위 5%미만 | 38 | 5%이상 10%미만 | 36 | 10%이상 15%미만 | 34 | 15%이상 20%미만 | 32 | 20%이상 25%미만 | 30 |
| 점수 | 20 | 50%이상 55%미만 | 18 | 60%이상 65%미만 | 16 | 70%이상 75%미만 | 14 | 80%이상 85%미만 | 12 | 90%이상 95%미만 | 10 |
| 점수 | 20 | 55%이상 60%미만 | 18 | 65%이상 70%미만 | 16 | 75%이상 80%미만 | 14 | 85%이상 90%미만 | 12 | 95%이상 | 2 |

□ 가계소득(50점) + 성적(5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50 | 45 | 40 | 35 | 30 | 25 | 20 | 15 | 10 |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실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
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점수 | 50 | 상위 5%미만 | 47.5 | 5%이상 10%미만 | 45 | 10%이상 15%미만 | 42.5 | 15%이상 20%미만 | 40 | 20%이상 25%미만 | 37.5 |
| 점수 | 25 | 50%이상 55%미만 | 22.5 | 60%이상 65%미만 | 20 | 70%이상 75%미만 | 17.5 | 80%이상 85%미만 | 15 | 90%이상 95%미만 | 12.5 |
| 점수 | 25 | 55%이상 60%미만 | 22.5 | 65%이상 70%미만 | 20 | 75%이상 80%미만 | 17.5 | 85%이상 90%미만 | 15 | 95%이상 | 2.5 |

□ 가계소득(30점) + 성적(7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30 | 27 | 24 | 21 | 18 | 15 | 12 | 9 | 6 |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실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
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점수 | 70 | 상위 5%미만 | 66.5 | 5%이상 10%미만 | 63 | 10%이상 15%미만 | 59.5 | 15%이상 20%미만 | 56 | 20%이상 25%미만 | 52.5 |
| 점수 | 35 | 50%이상 55%미만 | 31.5 | 60%이상 65%미만 | 28 | 70%이상 75%미만 | 24.5 | 80%이상 85%미만 | 21 | 90%이상 95%미만 | 17.5 |
| 점수 | 35 | 55%이상 60%미만 | 31.5 | 65%이상 70%미만 | 28 | 75%이상 80%미만 | 24.5 | 85%이상 90%미만 | 21 | 95%이상 | 3.5 |

□ 가계소득(70점) + 성적(3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70 | 67 | 64 | 61 | 58 | 55 | 52 | 49 | 46 |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실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 성비 | 점수 |
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점수 | 30 | 상위 5%미만 | 28.5 | 5%이상 10%미만 | 27 | 10%이상 15%미만 | 25.5 | 15%이상 20%미만 | 24 | 20%이상 25%미만 | 22.5 |
| 점수 | 15 | 50%이상 55%미만 | 13.5 | 60%이상 65%미만 | 12 | 70%이상 75%미만 | 10.5 | 80%이상 85%미만 | 9 | 90%이상 95%미만 | 7.5 |
| 점수 | 15 | 55%이상 60%미만 | 13.5 | 65%이상 70%미만 | 12 | 75%이상 80%미만 | 10.5 | 85%이상 90%미만 | 9 | 95%이상 | 1.5 |

□ 가계소득(100점)

○ 가계소득 배점기준

| 지원구간 | 0~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 9~10구간 |
|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|
| 점수 | 100 | 90 | 80 | 70 | 60 | 50 | 40 | 30 | 20 |

□ 성적(100점)

○ 성적 배점기준

-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

성적계산식: (취득평점/평점만점) x 100 (※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)

[평가 점수표]

| 성비 | 점수 | 상위 5%미만 | 5%이상 10%미만 | 10%이상 15%미만 | 15%이상 20%미만 | 20%이상 25%미만 | 25%이상 30%미만 | 30%이상 35%미만 | 35%이상 40%미만 | 40%이상 45%미만 | 45%이상 50%미만 |
|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점수 | 100 | 95 | 90 | 85 | 80 | 75 | 70 | 65 | 60 | 55 | 50 |
| 성비 | 점수 | 50%이상 55%미만 | 55%이상 60%미만 | 60%이상 65%미만 | 65%이상 70%미만 | 70%이상 75%미만 | 75%이상 80%미만 | 80%이상 85%미만 | 85%이상 90%미만 | 90%이상 95%미만 | 95%이상 |
| 점수 | 50 | 45 | 40 | 35 | 30 | 25 | 20 | 15 | 10 | 5 | 0 |

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

| 구분 | 종류 |
|-----------|--|
| 학자금 대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, 일반상환학자금 대출,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용자 등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학자금 대출 예)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,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|
| 장학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)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·II 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, 지역인재장학금, 대통령과학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, 인문100년장학금, 예술체육비전장학금, 대학원생지원장학금(2020년 사업폐지),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(2012년 사업폐지), 전문기술인재장학금(2019년 사업신설), 푸른등대 기부장학금,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(희망사다리 I 유형), 고졸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 유형)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 재단법인, 기업, 대학 등) 장학금 예) 교내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○○인재육성재단 장학금, 서울희망대학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, 호국장학재단 장학금,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|
| 중복지원 예외사항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 근로장학금,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,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국가산복무지원금(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)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①, 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※ 단,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|

* '23년 1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(단,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)

참고 3 소득확인 제출서류[필수/선택/다자녀]

① 필수서류(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)

-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(재외국민/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·서류징구 기준·서류처리대상·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임사대상 등)는 **별도지침** 참조
- *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

| 학생 | 부 | 모 | 제출서류 | 추가서류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|
| 미혼 | 생존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 ^{주1)} | | |
| | 생존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| |
| | 생존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| |
| | 생존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|
| | 생존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|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|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폐색인정 ^{주5)}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+ 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 ^{주9)}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+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사망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| |
| | 사망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폐색인정 ^{주5)} |
| | 사망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| |
| | 사망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폐색인정 ^{주5)} |
| | 사망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| 폐색인정 ^{주5)}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|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^{주9)} +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+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| 폐색인정 ^{주5)}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| |
| | 재외국민·외국인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| |
| 기혼 | 실종 | 생존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|
| | 실종 | 이혼 후 관계 단절 | 가족관계증명서(부+모) ^{주9)} + 실종 등 서류 ^{주2)} + 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주민등록표초본 ^{주7)} | |
| | 실종 | 사망 | 가족관계증명서(모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폐색인정 ^{주5)} |
| | 실종 | 실종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|
| | 실종 | 재외국민·외국인 | 가족관계증명서(부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| |
| | 배우자 생존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^{주1)} | | |
| |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| |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+주민등록표등본 ^{주4)} +건강보험자격확인서 ^{주6)} | | |
| | 배우자 사망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혼인관계증명서(학생) ^{주8)} | | |
| | 배우자 실종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+ 실종 증빙 서류 ^{주2)} | | |
| | 배우자가 재외국민·외국인 | | 가족관계증명서(학생) |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 ^{주8)} | |

- * 서류 확인 시, '최초 학자금 신청일'을 기준으로 판단함(원칙(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(확인) 불가 시는 별도 판단)
- * 신청완료 후 다음날(휴일 제외) 홈페이지(모바일 앱) 확인 시, '(필수서류)완료'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
- *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'상세'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(상세)·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표등본은 '정부24'(www.gov.kr), 대법원(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발급 가능
 -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(제적등본 예외)
- * '07. 12. 31. 이전 사망했을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'
 - '전후조와의 관계' 및 '호주승계사유'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
- *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, 보호종료확인서, 기본증명서,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
 - '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'
- 주1)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(동일세대주수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)
- 주2) 실종 증빙 서류: 가출·행방불명·실종 신고접수증(경찰서), 실종·부재 신고 신고증(법원), 거주불명자등(초)본(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)
- 주3) 재외국민·외국인 증명서류: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(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), ② 외국인(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, 여권사본,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(주소변경 포함))
- 주4) 주민등록표등본: '학생 단독세대주(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)' 또는 '가구원과 동일세대(본인만 제출)' 여부 확인 필요
- 주5) 폐색인정: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'폐색'이 기입되어, 사망 확인 가능
- 주6) 건강보험자격확인서: (학생기입자 또는 학생이 부(모)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)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(학생이 부(모)의 피부양자인 경우) 학생 본인(모든 가입내역 표기) 제출
- 주7) 주민등록표초본: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(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)
- 주8) 혼인관계증명서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
- 주9)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'일방'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'상세' 서류 제출

② 선택서류

◇ 복지자격서류 (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)

【복지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) 범위】

- 인정 범위 : 학생 및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·재산 조사 전,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
- *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(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)

| 구분 | 자격명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생계/의료) |
| | 기초의료급여수급자 | *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^{주1)} |
| 차상위계층 ^{주2)} | 기초주거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주거/교육) |
| | 기초교육급여수급자 | |
| |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
| | 차상위장애연급대상자 | 장애연급 수급자 확인서 |
| | 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|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|
| | 차상위자활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
| |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
| 차상위 계층 대상자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 |

* 신청완료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후 홈페이지(모바일) 확인 시, '(선택서류)완료'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

- 단, 가구원의 복지자격(기초 및 차상위)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

*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
* [신청정보]에 "기초생활수급자", "차상위계층", "장애인"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(SMS 등)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

주1)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

주2) 별첨5 참조: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

◇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

신청 시 입력한 형제·자매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, 대법원 가족관계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**증빙서류 제출**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|
| 이혼가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혼후관계단절된 부(모)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학생이 이복(동복)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학생의 이복(동복)형제를 부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) 이혼사실 등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, 2) 자녀합산을 위한 부(모)·계모(계부)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, 3) 부양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부모 양쪽이 이혼후관계단절된 경우 형제·자매 수 인정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단, 학생이 이복(동복)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 |
| 재혼가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부 또는 계모가 소득·재산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모(부), 계부(계모)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재혼사실 확인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(모)·계모(계부)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|
| 형제·자매의 사망, 말소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한 형제·자매는 형제·자매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, 학자금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(사망 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)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폐쇄 등록된 형제·자매는 형제·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형제·자매는 형제·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|

- ※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
- ※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- ※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첫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
(단,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(부모 또는 배우자)의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하여 제출)
- ※ 세부 처리기준은 학기별 「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」 참고

◇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| 증명서 | 명칭 | 발급기관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
| 1 | 장애인연금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· 장애인연금수급자는 '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'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|
| 2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 ·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|
| 3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 · 만18세 미만 발급 (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) |
| 4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국민건강보험공단 | ·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, 만성 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(부양 요건)을 모두 갖춘자 |
| 5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 주민자치센터 | |
| 6 | 수급자 증명서 | 주민자치센터 | 주거급여 수급자, 교육급여 수급자 |

참고 4

장학금 환수·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*(※대학공문 제출 필수)*

장학금 환수·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

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|--------|--|
| 인적사항 | 성 명 | | 대학명 | |
| | 전화번호 | | 학과 | |
| | 휴 대 폰 | | E-mail | |
| | 주 소 | | | |

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|
| 장학금 수혜현황 | 장학금 수혜학기 | 년도 학기 | 환수대상금액 | 원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| (상세히 기술할 것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
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: _____ (인)

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신청자 확인 사항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증빙 서류 제출 :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.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. 만일,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. |
|--------------|---|